

---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# 인권침해 구제매뉴얼

---

2023. 12.

**KIEP** 감사실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권경영 규정 제6장(인권침해 구제)에 따라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관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## I 추진배경

-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,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절차 마련
- 「인권경영 규정」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9조~제34조 명문화

## II 구제절차 개요

### 1. 용어의 정의

- 인권과 인권침해(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, 제30조 제1항)
  - ‘인권’은 「대한민국헌법」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,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‘인권침해’라고 함
- 인권침해 구제절차
  - ‘인권침해 구제절차’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,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절차를 말함

## 2. 인권침해 구제절차 대상

### □ 주요 인권침해 유형

<p><b>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</b> (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0조~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</li> </ul>
<p><b>차별로 인한 인권침해</b> (대한민국헌법 제11조,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별, 연령, 신체적 조건,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</li> <li>- 사회적 신분, 학력, 장애,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</li> </ul>
<p><b>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생활과 통신,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(대한민국헌법 제17조)</li> <li>- 종교나 신념,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(대한민국헌법 제19조, 제20조, 제21조)</li> <li>- 집회·결사의 자유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(대한민국헌법 제21조)</li> <li>-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</li> </ul>
<p><b>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합, 체벌, 가혹행위,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</li> <li>- 폭언, 욕설,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</li> <li>-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</li> </ul>
<p><b>교육권·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</li> <li>-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</li> </ul>

□ 고충처리, 성희롱·성폭력 고충 등 피해신고 사안별 해당위원회 이관 후 관련 내규 등에 따라 처리

### 3. 인권침해 구제기구

□ 전담조직 :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감사실로 지정

□ 인권침해 상담(신고) 센터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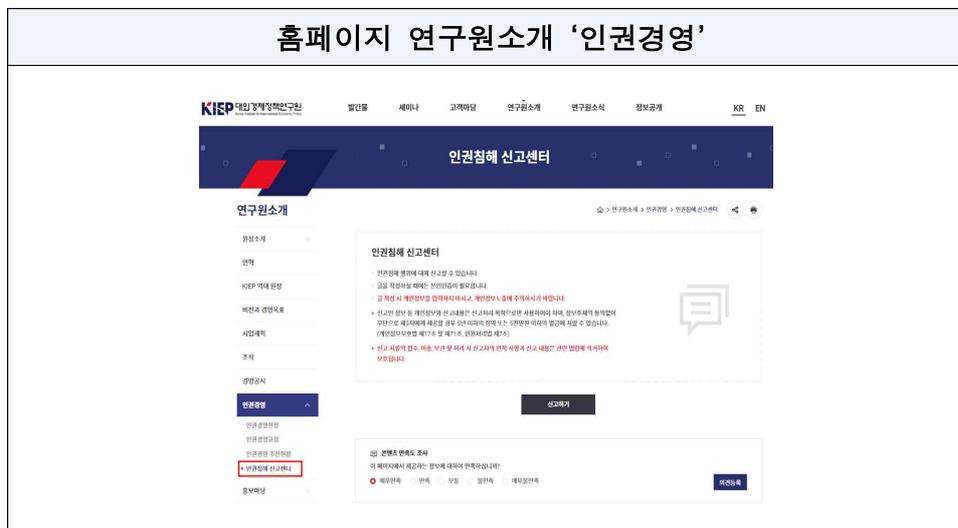
- 홈페이지 ‘인권경영’ 메뉴 ‘인권침해 신고센터’ 에 신고

■ 내부직원 및 외부이해관계자 피해 시 구제를 위한 외부신고시스템 (인권침해 신고센터) 설치·운영 중

- ‘인권침해신고서[별첨]’ 를 작성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신고도 가능

구분	주요내용	
설치장소	「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」 내 ‘인권경영’ 메뉴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•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.</li> <li>• 글 작성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, 개인정보노출이</li> <li>• 신고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신고처리 목적으로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! (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, 민원처리법 제7조)</li> </ul>
주관부서	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감사실	
처리절차	홈페이지 ‘인권경영’ 인권침해 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서를 통한 피해사례 신고 ▶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전달	
기타사항	무기명의 신고는 접수·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 (단,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 가능)	

### ■ KIEP 인권침해 신고센터



### III 구제절차

#### □ 구제절차 흐름도

단 계	내 용	주 체
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홈페이지 '인권경영' 메뉴내 '인권침해 신고센터'를 통해 온라인 신고</li> <li>'인권침해신고서'를 작성하여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신고 *인권침해 신고서[별첨]</li> </ul>	내부직원, 외부 이해관계자
인권침해 유형별 분류 및 각 위원회 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충처리, 성희롱·성폭력 고충 등 피해신고 사안별 해당위원회 이관 후 관련 내규 등에 따라 처리 ※ 이 외 인권침해 관련 사안은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처리</li> </ul>	각 고충처리별 담당부서 및 위원회
신고접수 및 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담당자는 인권침해신고서(온라인/서면)를 접수하여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 - 인권침해사항 인권침해 접수대장에 기재</li> <li>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 여부 담당 - 다양한 이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후 신고내용이 인권침해와 관련 없을 경우 등은 각하 *[별지 제1호 서식]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</li> </ul>	인권경영 담당부서
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장 및 위원장(인권경영위원회)에게 사실 보고</li> </ul>	인권경영 책임관
위원회소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권경영위원회 상정 및 소집</li> </ul>	인권경영 담당부서
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면, 출석 요구 등으로 조사를 수행 - 신고 내용 비밀보장 및 신고 불이익 방지</li> <li>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</li> </ul>	인권경영 위원회
심의·의결 및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*[별지 제2호 서식] 인권경영위원회 심의·결정서</li> </ul>	인권경영 위원회
시정 및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정명령에 따라 조치</li> <li>재발방지 교육 등</li> </ul>	인권경영 담당부서

※ 경미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 합의 가능

※ 인권경영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행위가 심각한 경우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 IV 인권침해 시 조치사항

### □ 담당부서 조치사항

조치사항	내 용
전문적 상담 권유 및 사건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</li> <li>- 행위자에게 비난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나 가해자로 낙인찍는 태도 금물</li> <li>-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 유지</li> <li>- 행위자의 행동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조력</li> <li>- 피해자에 대한 소문 유포, 비난, 위협, 자체적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만남 요청, 연락 등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동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고지</li> </ul>
피해자 보호조치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차 피해 예방 및 진행사항 주시</li> </ul>
철저한 비밀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담 및 사건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</li> </ul>

### □ 피해자 조치사항

조치사항	내 용
인권침해 사건발생부터 순서대로 자료정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메시지, 이메일, 녹취, 증인확보 등</li> </ul>
공식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담 자체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진행하지 않으므로, 자연스런 소통과정이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상담 요청</li> </ul>

### □ 행위자 조치사항

조치사항	내 용
즉시 진심어린 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권침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모욕감 등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</li> </ul>
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 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실하게 조정 내용을 수용하고,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</li> </ul>
성실한 조사 협조 및 합당한 징계 결정 시 수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징계 결정 시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</li> </ul>
사건 은폐·왜곡 등 2차 가해 시도 중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 (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추가 징계대상)</li> </ul>

[별첨]

## 인권침해 신고서

신고자	성명		소속		직위(직급)	
신고사항						
피해 일시 및 장소						
피침해자						
침해자						
침해내용						
20 . . . .						
신고자				(서명)		



<별지 제2호 서식> : 인권경영위원회 심의·결정서

<b>인권경영위원회 심의·결정서</b>	
회기	2000년 제00차 인권경영위원회
일시 및 장소	2000년 00월 00일(0) 00:00~00:00, 000호 회의실
심의안건	
심의내용	
결정내용	
<p>2000년 제00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신고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위와 같이 심의하여 결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                   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: 000 (서명)                      위 원 : 000 (서명)                 </p>	